

일부 허위인 점이 있어도 이에 관하여 보도자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또는 그 보도 내용의 진위여부 확인에 있어서 경솔하게 이를 무시해 버린 점이 없다고 한다면, 그 신문사를 상대로 허위 보도를 이유로 소송(false light suit)을 제기 할 수 없다.

Pope v. The Chronicle Publishing Co. 24 Med, L. Rptr. 2384 (미연방제 7 항소법원)

## 판시요지

신문의 기사나 논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에 입각하고 있고, 또한 고도로 공격적인 표현이 아니며, 일부 허위인 점이 있어도 이에 관하여 보도자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또는 그 보도 내용의 진위여부 확인에 있어서 경솔하게 이를 무시해 버린 점이 없다고 한다면, 그 신문사를 상대로 허위 보도를 이유로 소송(false light suit)을 제기할 수 없다.

## 사건개요

이 사건은 신문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내지는 허위보도의 책임을 묻는 민사사건의 소송으로서 하급법원인 일리노이 중부관할의 미연방지방법원이 피고 신문사의 약식판결(summary judgment) 신청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미연방제 7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을 거의 옳다고 지지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했다.

원고(Ronald Pope)는 전직 소련문제 전공 국제정치학 대학교수로서 냉전 체제의 붕괴 이후 구 소련이 과거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이함에 있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를 타개하는 데 일조를 하여야겠다는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갖고 어떤 종류의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는 'Serendipity'라고 하는 러시아 개발 및 자문회사(이하 원고회사라 함)를 설립하였는데 그 사업 내용은 "First American Home in Russia"라고 이름 붙여진 대규모 건설공사로서 이는 과거의 불량주택에서 거주하던 러시아인들로 하여금 행정당국의 도움(예컨대 사업부지의 무상 제공)과 원고회사의 자금투자 등의 합작 하에 미국식의 현대식 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하여 여기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 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혜적 의미와 함께 그 사업을 통하여 원고회사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자본주의적 영리주의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즉 이 공사는 박애주의 정신과 함께 상투적인 Yankee 사업주의의 결합으로써 말하자면 이 공사는 소련인을 문명적 수준의주거지에서 거주하도록 만들고 싶다는 사명감과 함께 그 주택의 분양에서 생기는 사업이익의 획득이라고 하는 동기가 결합된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고향마을인 일리노이주의 어떤 마을의 지방신문인 Pantagraph 라고 하는 신문이 소련의 어떤 지방신문의 기사를 부분 인용하여 기사와 논설의 형식으로 두 번에 걸쳐 이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였다. 그 내용의 골자를 보면 미국시민인 원고가 소련에서

행하는 위 사업의 시행착오적 요소, 문화갈등적 요소, 소련인의 자본주의에 대한 조급한 갈망과 함께 그 사업 시행의 지연과 그 사업추진의 동기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되는-실망감, 원고 및 원고로 대표 되어지는 미국인에 대한 위 소련지역민의 불신감과 비판의 여론을 보도한 것이다. Pantagraph는 The Chronicle Publishing Company(이하 피고회사라 함)라고 하는 네바다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당연히 원고는 위 신문보도 내용에 관하여 불만을 나타내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은 피고회사가 원고 및 원고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 그리고 원고 개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false light) 하였다는 것이다.

## 판결이유(요약)

### 1. 먼저 명예훼손 책임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일리노이주법에 의하면 다른 신문 등의 기사를 인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명예훼손적 기사를 보도한 자는 비록 명백히 발행인이 그 신문기사의 취재원을 밝히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에 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Pantagraph가 원고에 관하여 이미 같은 내용을 보도한 소련의 지방신문('Vedomosti')의 기사를 일부 인용하여 보도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쟁점과 성격에 관한 본질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일리노이 주법에 있어서의 명예훼손의 개념과 입증책임에 관하여 계속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주보통법과 주법원의 선례, 그리고 Restatement 등의 법원에 관하여 살펴 보고 있다.)

명예훼손에는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slander)과 문서, 도면에 의한 명예훼손(libel)의 2종이 있고, 또 명예훼손의 입증과 관련하여서는 'defamatory per quod' 와 'defamatory per se' 두 가지 법리가 보통법상 발전되어 왔다. 문서, 도면에 의한 명예훼손(libel)은 실해(special damage)가 없어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나,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slander)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이 되는 실해의 존재의 표시를 defamatory per quod 라고 한다. defamatory per se 는 실해의 존재가 없어도 명예훼손이 되는 표시를 지칭하는 법리이다.

원고는 defamatory per se 의 이론에 입각하여 실해의 존재가 없어도 원고의 청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일리노이 주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합리적으로 볼 때 선의로서 행하여진 것(innocent)이라고 해석되어지는 보도는 defamatory per se 가 아니다."라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의 기준에 관하여 "피고언론사가 행한 보도의 자연스럽고 명백한 의미를 놓고 볼 때 그 보도에서 추론되는 암시와 그 보도내용을 종합하여 선의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그 보도가 합리적으로 볼 때 선의라고 해석되어지거나 또는 원고 이외의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 질 때에는 피고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는 선례가 발견된다. 또한 이 법원의 선례에 따르자면 이러한 경우 언론사인 피고는 몇 가지 행할 수 있는 소송상의 항변사유가 있는데 예컨대 첫째, 전체적으로 보아 기사가 사실이라면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그 기사의 허위성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공적 관심사에 관련된 의견 보도로서 허위성의 정도가 농후하지 않다면 그 보도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법적 선례와 이론을 전제로 하여 놓고 이 사건에 관하여 돌아와 본다. 피고신문이 사실보도기사에서 원고가 인도적 후원(humanitarian aid)의 견지에서 프로젝트를 착수했다고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고가 소련의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이 사업의 정보를 오도 시켰거나 감추면서 위 도시 프로젝트를 강행하였다고 보도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사실에 맞고, 또한 원고가 그 자신을 도시거주민들의 후원자 내지는 은인(benefactor)이라고 자칭하였다고 보도한 부분은 위 후원자나 은인이나 하는 표현이 도대체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아니므로, 그렇다고 표현하였다 하여 피고에게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위 사업이 소련인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보도한 기사 부분은 법상 보호되는 언론기관의 의견의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역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신문의 논설기사에서 원고가 주택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계속 유지하였다고 보도한 것은 전반적으로 이는 사실에 맞고, 원고가 소련의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위 사업의 정보를 오도시켰거나 감추었다고 한 부분은 명예훼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고, 또한 원고의 사업동기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사실에 입각한 것이며 또한 원고를 추악한 미국인('ugly American')이라고 표제 또는 내용으로 쓴 것은 법상 보호되는 의견의 표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이유로 하여 피고의 약식판결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의 태도는 옳고 원고의 항소논지는 이유가 없다.

## 2. 다음 허위보도(false light) 책임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일리노이주법에 의하면 허위보도(false light)청구에서는 원고가 입증해야 할 세가지 요건이 요구된다. 그 첫째는 원고가 피고의 행위, 즉 피고가 신문사일 경우 그 보도행위의 결과로써 대중들 앞에서 원고가 허위로 인식되어지게 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문제되는 허위보도가 합리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대단히 분격하게 만들 정도로 공격적인 표현이라는 점이며, 셋째는 피고가 위 허위보도행위를 함에 있어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갖고 보도를 했다는 점, 즉 피고가 허위의 인식을 갖고 보도를 하였거나 또는 그 보도내용의 진위여부의 확인을 대단히 경솔하게 무시하고 보도를 하였다는 점이다.

이제 이 사건에 관하여 돌아와 판단한다. 원고는 위 세 요건의 입증할 수 없었다. 즉 이 사건 피고의 기사나 논설은 모두 원고의 위 사업이 소련 지방에서 당면한 문제인 소련인들의 비판과 문화적 충돌의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써 결국 전반적으로 사실에 부합하여 따라서 피고의 위 보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대중들 앞에서 허위로 인식되어지게 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그 보도내용이 사실판단을 하는 사실발견의 주체로서의 배심원들로 하여금 "대단히 공격적인 표현"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판단되어질 정도가 아니며, 또한 일부 피고의 보도가 사실과 불일치 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피고가 그

보도내용의 진위여부의 확인에 있어서 대단히 경솔하게도 이를 무시한 점이 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이유로 하여 개인인 원고가 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허위보도소송(false light suit)에 있어서 그 신문의 기사나 논설은 모두 대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고, 고도로 공격적이지 아니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 확인에 있어서 경솔하게 이를 무시한 점이 발견되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급법원이 피고신문사의 약식판결(summary judgment)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옳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 및 조처를 공격하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